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8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부 제출(제220218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4. 검토의견	3
가. 개요	3
나.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23조 및 제49조 등) ...	4
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 신설 (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10

I. 정부 제출(제2202183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7. 24.

다. 회 부 일 : 2024. 7. 25.

2.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제8항)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 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53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의견

가. 개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①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②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③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제21대 국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총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그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처리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5건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 제출 현황 】

제22대 의안번호 (제21대 의안번호)	의안명	내용
2202183 (21232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②, ③
2202188 (21232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2202185 (21232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②, ③
2202184 (21232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②, ③
2202182 (21232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②, ③
(212321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 처리(대안반영폐기)	②, ③

나.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23조 및 제4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u>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u> <u><신설></u> ⑤ (생략)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u>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1. <u>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u> 2. <u>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⑧ ~ ⑩ (생략)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u>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u>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1.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u>스마트실증사업</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스마트실증사업(제49조제8항은 제외한다)”으로----- ----- ----- ----- ----- ----- -----.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인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기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49조제8항)하고, ②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1)’의 심의 대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비교】

구분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정의 (제2조)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u>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u>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u>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u>
대상 (제49조 및 제50조)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유형	임시허가	실증특례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0. (생략)

11.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 규제샌드박스 유형 】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이후 관련 규제 개선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료 :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계획에 대해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됨²⁾.

개정안은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이 기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종의 신속처리절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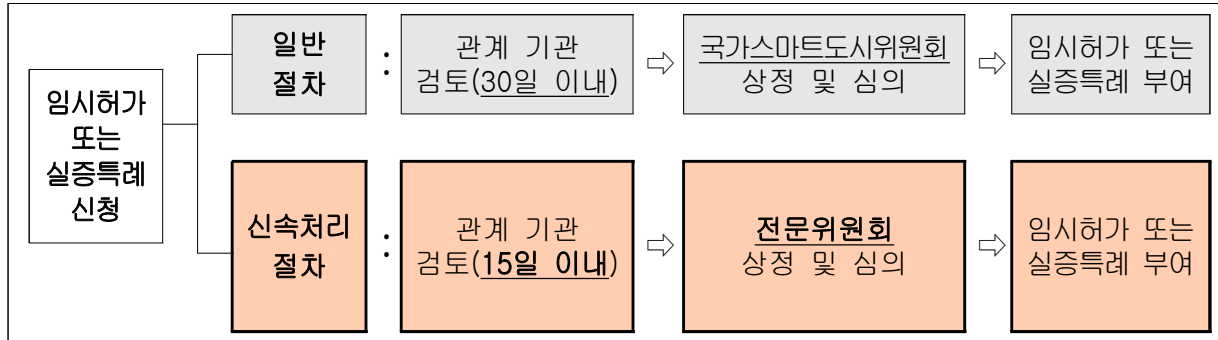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차(패스트트랙)를 신설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른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도입 이후 4년 동안 51건을 승인하였고 그 중 동일·유사과제 비중은 21.6%³⁾로서, 유사·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⁴⁾ 대신 전문위원회⁵⁾의 심의를 거칠 경

3)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안건 중 동일·유사과제 비중

구분	'20	'21	'22	'23	합계
승인과제(건)	16	18	5	12	51
동일·유사과제(건)	2	4	2	3	11
동일·유사과제 비중(%)	12.5%	22.2%	40.0%	25.0%	21.6%

4)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20	'21	'22	'23	합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건)	2	3	1	5	11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규제특례 분야

2. 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9. 19.>

우 관계 기업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추가적으로, 안 제50조제1항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문구 삭제의 경우 2021.2.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⁶⁾을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조문 정비가 미비한 측면을 수정하는 것임.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의안번호 21042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2.26. 본회의 수정가결

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현행	개정안
<신설>	제53조의4(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설>	제53조의5(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업무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먼저, 적극행정 면책 특례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속확인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소극적 행태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
선의 효과를 높이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됨.

현행 「감사원법」 제34조의3⁷⁾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2⁸⁾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
만, 개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규정을 두는 경우 관
계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면책규
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적극행정 면책규정 입법례】

법 률	조 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 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

7)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법 률	조 문
	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은 관련 산업 활성화 장려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